

#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1. 12. 10.  
제안자 : 총무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안에 별표를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수정골자

○ (사용료의 징수 등) "부과·징수기준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별도로 고시한다" 를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로 수정함. (안 제12조제1항)

○ (사용료의 징수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를 "이 조례에서 수강료의 범위만 정한 별표 제2호가목에 규정한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로 수정함. (안 제12조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인 대관료·강습료 및 이용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별도로 고시한다.</p>	<p>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종류 및 징수기준 은 별표와 같다.</p>
<p>② (생략)</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이 조례에서 수강료의 범위만 정한 별표 제2호가목에 규정한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p>

### 수 정 안 대 비 표

원안	수 정 안																																
(신설)	<p>(별표)</p> <p>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강습료,이용료)종류 및 정수기준(제12조제1항관련)</p> <p>1. 시설사용료</p> <p>가. 일반기준</p> <p>(1)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p> <p>(2)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을 할증할 수 있다.(결혼식 제외)</p> <p>(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p> <p>(4)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 마다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p> <p>(5)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과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의 야간(철야포함)작업에 따른 기본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p> <p>(6) 주차장의 주차료는 개별기준에 따른다.</p> <p>나. 개별기준</p> <p>(1) 대공연장 사용료</p> <table border="1" data-bbox="349 1252 1142 1546"> <thead> <tr> <th>구 분</th> <th>기본 사용시간</th> <th>기본 사용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대 관 료</td> <td>1회 3시간</td> <td>100,000원</td> <td></td> </tr> <tr> <td>음향장비</td> <td>1회 1시간</td> <td>15,000원</td> <td></td> </tr> <tr> <td>조명시설</td> <td>1회 1시간</td> <td>15,000원</td> <td></td> </tr> <tr> <td>피 아 노</td> <td>1회 3시간</td> <td>15,000원</td> <td></td> </tr> <tr> <td>영상장비</td> <td>1회 3시간</td> <td>30,000원</td> <td></td> </tr> <tr> <td>녹음 및 녹화</td> <td>1회 1시간</td> <td>15,000원</td> <td></td> </tr> <tr> <td>냉·난방</td> <td>1회 3시간</td> <td>3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100,000원		음향장비	1회 1시간	15,000원		조명시설	1회 1시간	15,000원		피 아 노	1회 3시간	15,000원		영상장비	1회 3시간	30,000원		녹음 및 녹화	1회 1시간	15,000원		냉·난방	1회 3시간	30,000원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100,000원																															
음향장비	1회 1시간	15,000원																															
조명시설	1회 1시간	15,000원																															
피 아 노	1회 3시간	15,000원																															
영상장비	1회 3시간	30,000원																															
녹음 및 녹화	1회 1시간	15,000원																															
냉·난방	1회 3시간	30,000원																															

수 정 안 대 비 표

원안	수 정 안			
	(2) 소강당 사용료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50,000원	
	음향장비	1회 3시간	15,000원	
	조명시설	-	무료	
	피 아 노	1회 3시간	10,000원	
	영상장비	1회 3시간	20,000원	
	녹음 및 녹화	1회 3시간	10,000원	
	냉·난방	1회 1시간	20,000원	
	(3) 다목적홀 사용료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30,000원	
	음향장비	1회 3시간	15,000원	
	조명시설	-	무료	
	피 아 노	1회 3시간	10,000원	
	영상장비	1회 3시간	20,000원	
	(4) 종합체육관 사용료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100,000원	
	음향장비	1회 3시간	15,000원	
	조명시설	1회 1시간	10,000원	
	냉·난방	1회 1시간	30,000원	
	(5) 소 체육관 사용료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2시간	30,000원	
	음향장비	1회 2시간	15,000원	
	조명시설	1회 2시간	10,000원	
	냉·난방	1회 2시간	20,000원	

### 수 정 안 대 비 표

원안	수 정 안						
(6) 기타 시설의 사용료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원)</span>							
구 분	연습실1,2 (지하1층)	식당 (지하1층)	로비 (지하1층)	라운지 (지상1층)	시청각교육실 (지상4층)	컴퓨터교육실 (지상4층)	문화교실 小,中,大 (지상5층)
용 도	음악,전극등 연습	식당	전시공간	전시공간	시청각교육	컴퓨터교육	경과
대 관 료 (1시간기준)	5,000	10,000	10,000 (전시관역이 포함)	10,000 (전시관역이 포함)	20,000	20,000 (합류타사용기)	15,000
음향장비 사 용 료 (1시간기준)	-	-	-	-	10,000	10,000	10,000
조명시설 사 용 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피 아 노 사 용 료 (1시간기준)	-	-	-	-	5,000	-	-
영상장비 사 용 료 (1시간기준)	-	-	-	-	10,000	10,000	10,000
녹음 및 녹화 (1시간기준)	-	-	-	-	5,000	5,000	-
방·난방	무료	10,0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7) 주 차 료							
구 분	월 정기권사용자/월 수강자		1회 사용자		비 고		
주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시간 무료</li> <li>• 10분 경과시마다 500원추가 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1시간 2,000원</li> <li>•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징수</li> </ul>		시설사용 행사준비차량은 2대까지 무료		

### 수 정 안 대 비 표

원안	수 정 안									
	2.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									
	구 분		수 강 료						비 고	
			성 인		중·고생		초 등 생			
	문화강좌 프로그램		20,000~25,000		20,000		20,000~25,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기	25,000~40,000		23,000~35,000		20,000~30,000			
		1회기본료	1,800~2,300		1,200~2,000		1,000~1,500			
	전산교육 프로그램		35,000~40,000		35,000		30,000			
	유아·초등생교육 프로그램		25,000~100,000		30,000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사용료는 월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2회 내지 5회 기준임.</li> <li>• 1회 기본료는 1일 2시간 기준임.</li> <li>• 프로그램 내용 및 수강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li> </ul>							
	나. 체육시설 사용료									
	(1) 수 영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원/월)</span>									
	구 분	성 인		중·고생		초 등 생		유 아 (3회/주)	비 고	
		3회/주	5회/주	1회 (기본료)	3회/주	1회 (기본료)	3회/주			5회/주
	사용료	50,000 (강습료)	50,000 (이용료)	2,500 (강습료)	30,000 (강습료)	1,700 (강습료)	25,000 (강습료)	50,000 (심도과정)	1,300 (염마포양)	40,000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강습료 및 이용료는 월단위 사용료임.</li> <li>• 기본료는 1일 입장료로 1일 2시간 기준임.</li> </ul>								
	(2) 헬 스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원/월)</span>									
	구 분	성 인		중·고생		비 고				
		6회/주	1회 (기본료)	6회/주	1회 (기본료)					
	사용료	40,000	3,000	35,000	2,500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강습료 및 이용료는 월단위 사용료임.</li> <li>• 기본료는 1회 입장료로 1일 2시간 기준임.</li> </ul>								

### 수 정 안 대 비 표

원안	수 정 안						
	(3)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 분	전일이용(주6회)		주간이용(주6회) (09:00~17:00)	자유이용 (시간제)			비 고
	성인	중·고생	성인, 중·고생	40분	60분	80분	
사용료	80,000	75,000	70,000	4,000	6,000	8,000	
3. 독서실							
구 분	성 인		중·고생	비 고			
사 용 료	30,000원/월		500원/회				

##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1.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마포구민회관이 건립되고 그 명칭이 마포문화체육센터로 변경되어 확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두루 갖춘 마포문화체육센터의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로 개정함.
- 나. 마포문화체육센터(舊 마포구민회관)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0번지 3호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마포문화체육센터는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체육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 라. 마포문화체육센터를 직영하는 경우에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항)
- 마.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바. 마포문화체육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사. 시설 사용료인 대관료·강습료 및 이용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아. 입장제한 대상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허가 정지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1) 입장제한 대상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만취 또는 의식이 불명한 자
-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2)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대상

-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 사용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자.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고, 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차. 이용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 및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3.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2001.1.12법률 제6115호) 제127조, 제130조, 제135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2000.7.1 대통령령 제16789호) 제42조

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2001.7.30 대통령령 제17330호)

제11조 내지 제15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1.11.5~11.2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1.11.3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5. "강습료"는 센터에서 여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라 함은 센터의 각종 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7. "수탁자"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0번지 3호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센터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체육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 지원 등)**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여 할 수 있다.

##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구청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계속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영리행위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이상 경합시에 는 다음 각호의 1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 허가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2. 문화예술 또는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문화 예술대회, 문화예술행사,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제9조(사용시간) ①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구 분	독 서 실		독서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	
	하 계 (5월 1일~10월 31일)	동 계 (11월 1일~4월 30일)	하 계 (5월 1일~10월 31일)	동 계 (11월 1일~4월 30일)
개방시간	07:00~24:00	08:00~24:00	06:00~22:00	06:00~21: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다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9조에 명시한 사용 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3. 시설의 개수공사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11조(대관의 승인 및 임대사용 허가) ①구청장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30일 미만의 사용의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거나 30일 이상의 사용의 경우에는 임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대관 및 임대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인 대관료·강습료 및 이용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별도로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 2. 국가·공공단체 또는 적능단체 등이 직접 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의 보호나 지원을 받는 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후 지체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행사종료후 익일 17:00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 2.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사용료의 2분의 1 반환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제12조제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장 보 칙

제15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 또는 의식이 불명한 자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 할 수 없다.

②사용후 사용자는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 로 하여금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

를 하거나 구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조례 등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적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